

2012년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2011.12.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 목 차 -

1. 기본방향	1
2. ‘12년도 대상품목 선정	1
3. ‘12년도 선도조직 선정	1
4. 선도조직 관리	4
5. 선도조직 실적 평가	7
6. 선도조직운영위원회 운영	8
7. 선도조직 지원	9

<붙임>

1.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13
2. 품질관리매뉴얼 제출 협약서	21
3.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선정 평가서	22
4.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약정서(안)	24
5. 수출선도조직과 농가간 표준수출규격품 재배계약서(안)	29
6. 생산이력ID 부여 현황표	31
7.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및 정산기준	36

2012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1. 기본방향

- ☐ 농식품수출선도조직(이하 “선도조직”이라한다)의 규모화 및 수출창구 단일화 및 업체간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우량 선도조직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선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체 수출기업의 상향 평준화 유도

2. ‘12년도 대상품목 선정

☐ 선정방향

- ‘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효과가 큰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대상품목 추가 선정
- 품목별 선도조직은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을 통한 수출창구의 단일화, 규모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2개 조직까지 선정 가능
* 2개 선도조직이 존재하는 품목(파프리카)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12년도 신규 선정품목 : 신선농산물

☐ ‘12년도 사업대상 품목 : ’09~‘11년도 선정품목 및 신규선정품목

- * ‘11까지 선정된 품목 : 채소특작(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여름딸기, 겨울딸기, 팽이버섯, 새송이), 화훼(백합, 장미, 국화, 선인장), 과실(사과, 단감, 가공품김치, 유자차)

3. ‘12년도 선도조직 선정

☐ 신청요건

- 선도조직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2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했거나 국가 수출기여도 비중이 최소 20% 이상인 업체(aT 수출물류비 지원자료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첨부시 인정)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 ② 선도조직으로 기 선정되어 있는 품목을 신청시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해당품목 선도조직의 수출액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③ 조직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 ④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단, 공고일 현재 출범품목에 한함)
- ⑤ 사업자 선정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출물류비를 6월 이상 제재 받지 않은 업체(단, 신청 품목에 한하며, 연합법인으로 신청시 자격 미달회원사 실적은 합산시 제외)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최근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별지3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지원신청서상 부속되는 아래서류는 별첨
 - 신청품목의 계약제배 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가점(친환경, ISO, GAP, 전통식품 등) 및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확인서류
-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참여시 법인설립증명서(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단,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은 3차 심사 전일임

□ 선정절차

- 모집공고 : 언론매체(일간지·전문지 등)와 aT홈페이지(www.at.or.kr) 등을 활용하여 공고
-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 ① 1차 심사(서류심사) (붙임 3참조 : 4개 항목, 60점 만점)
 - : 품목별 심사결과 40점(가점포함)이상 획득한 수출업체 중 3개 수출업체(이하“업체”라 한다)까지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② 2차 심사(현장실사)

: 1차 심사 시 통과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제출 서류의 요건 적합성 확인 및 3차 심사 자료 수집)

③ 3차 심사(사업계획서 평가)

: 업체별 사업계획서 발표내용(PT) 청취 및 평가(최종 선정은 평가 결과 총점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선정)

□ 선정방법

- 선도조직 모집 공고시 신청한 업체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품목당 1개 업체 선정
 - 선도조직 선정 포기시 차순위 업체를 선도조직으로 선정(선정년도에 한함)
- 1개 업체가 여러 품목 신청할 수 있으나 1품목만 선정
 - 단,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한 법인의 경우 복수 품목으로 구성된 부류조직으로 선정 가능
-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 붙임 참조)

항 목 (세부항목갯수)	가중치	세 부 항 목
발전·성장가능성 (2)	30	수출규모, 국가수출점유비중
고품질생산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 능력 (2)	30	수출계약재배물량비중, 생산이력추적 가능정도
사업수행 적정성 (3)	40	농가관리·선별시설 상태, 품질·품위인력운영의 적정성, 회원사 역할분담 등 조직관리체계 구축정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능력
합 계 (7)	100	*가점 (최대 10점) 별도

□ 선정위원회 운영

- 위 원 : 수출선도조직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계·업계·연구계 등 농식품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주요기능 : 선도조직 선정을 위한 2차 심사(현장실사), 3차 심사(평가)

4. 선도조직 관리

□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선도조직간 약정서 (붙임 4) 체결(공사 ↔ 선도조직)

- 사업목표량 및 의무량, 생산이력ID 부여 관리, 생산품에 대한 품위관리, 보고사항, 사업비 정산, 각종 위반 시 제재사항 등

* 선도조직이 사업 참여 생산자에게 생산이력 ID를 부여하여 관리

- 약정서에서 정한 제재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 ID등록 삭제(미등록 생산자 물품혼입 방지 등을 위해 필요)

□ 선도조직과 생산자간 수출농산물 공급 계약체결(선도조직 ↔ 생산자)

- 표준 수출규격품 재배계약서를 참고하여 체결(붙임 5)

□ 계약체결 생산자에 생산이력ID 부여 관리

- (공사) 선도조직에 ID 부여 → (선도조직) 지역·생산자별로 생산이력 ID를 자체 부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공사에 제출

- 지역식 별표(3자리) : 공사가 제공하는 지역식 별표에 따라 부여

- ID구성요소(12자리) : 조직(2), 연도(2), 품목(2), 계약재배지역(3), 농가(3)순

* 사업자가 자체 ID(타 사업과 연계한 ID 등 포함)를 부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ID 준용 가능

- 선도조직이 생산이력ID 부여 후 공사에 제출 서류

- 생산이력ID 부여 현황표 1부 (붙임 6)

- 생산자와의 재배계약서 사본 1부

- 농가별 생산이력 정보 1부

- 농가별 농약안전성 준수각서 사본 1부 (화훼류 제외)

- 생산이력정보 제공 ID를 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으로 수출박스에 표기하고 승인된 선별장에서 규격품 선별·포장작업 실시

Traceability ID				
Exporter	Year	Item	Area	Grower
00	00	00	000	000

○ 선도조직은 생산자별 ID관리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 가공품인 경우 바이어와 협의 등에 따라 ID부착의무 제외 가능

□ 품위기준 설정

○ 공사는 업체가 선도조직 신청 시 제시한 품위기준을 토대로 적정수준 설정하여 운영

* 선도조직은 품질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 및 교육을 통해 품질지도

* 해외 바이어의 요구사항 등 점검하여 품위기준에 반영 검토

□ 선도조직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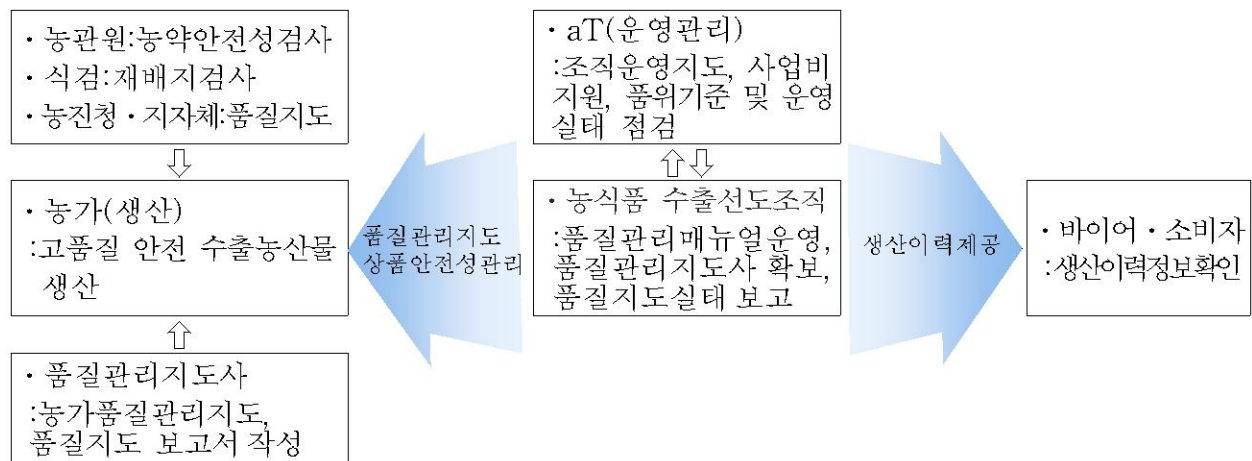
○ 공사는 선도조직의 ID부착, 품위규격 준수 등 품위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점검으로 대체 가능

○ 공사는 선도조직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가능

* 점검결과 사업성과 부진 선도조직은 주의 촉구하여 사업목표 달성 경각심 제고

○ 품질관리 지도체계



□ 선도조직 교육

○ 선도조직 사업자, 회원사 및 소속농가 대상 조직화 교육을 통해 사업 참여자간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 선도조직 사업자 대상 교육학점제도 시범 도입·운영

- 교육 1건당 1학점 부여하고 최소 5학점 이수 의무

□ 선도조직 사업과 휘모리 브랜드 사업과 통합운영 관리

- 휘모리 브랜드 운영 관리는 농식품 선도조직 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통합관리 실시
- 선도조직 중 희망조직에 한해 휘모리 사용권 부여
 - 사용희망 조직은 aT에 신청 후 승인 받아 휘모리 브랜드권 부여
 - * 휘모리 물류비 인센티브는 '12년부터 폐지
 - * 다만, 기존 휘모리 사업자 대상 지급되던 휘모리 인센티브는 '11년도 중 정식(定植) 또는 수확 후 '12년도 까지 수출하는 등 해당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12.6월까지 지원을 7% 적용·지급하고 7월부터 지원 중단(단, 연중 생산 가능한 김치는 '12.1.1부터 중단)
 - * 휘모리 브랜드 마케팅·홍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름

□ 사업참여 결속력 강화

- 연합법인 선도조직 참여 업체(회원사)가 중도 이탈할 경우, 선도조직 사업참여 기간동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기본·인센티브 포함) 및 3년간 선도조직 사업참여에 제한
- 농가와의 규격품 재배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율 10%미만 농가는 차년도 사업참여 제외

□ 선도조직 간 협력한 수출물량 실적인정

- 규격품 수출시 수출면장 상 수출자 명의를 해당품목의 선도조직이 아닌 타 선도조직이라도 사전에 인정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1년간 한시적 인정)
 - 전년도 수출비중(물량)이 10% 미만인 신규 국가 등에 수출할 경우, 사전에 aT에 신청하여 인정된 물량에 한함(동일부류 선도조직간 수출실적만 인정)
- ※ 신청조직은 해당품목의 수출예정물량, 협력 필요성 등 사전검토자료 제출

□ 선도조직 사업목표 설정

- 규격품수출물량 목표 및 농가 참여면적 목표 2개 계량목표 부여
 - 규격품 수출물량 목표는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한도 물량이며, 목표 물량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하는 것이 원칙
 - * 연간 평가결과 실적미달 또는 품목별 특성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타당성 검토하여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목표 설정·조정

5. 선도조직 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선도조직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평가 가능하며, 연말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차등 지원폭 등 결정

□ 평가항목

- 계량 평가 50% 및 비계량 평가 50%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중치	특 점	평가방법 및 점수				
계 량 (50)	사업목표 달성도 (50)	사업목표 달성도 규격품 수출물량, 재배면적 목표대실적 ※평균달성율[①+ ②/2]로 평가	30		①규격품 수출물량 목표 (%) : 수출물량실적/목표 × 100 ②재배면적 목표 (%) : 참여재배면적(천㎡)실적/목표×100				
		국가전체대비 수출신장을 선도조직 수출신장을 - 국가품목 수출신장을 = 실 신장을 ※ 신장은 전년대비 기준	20		수	우	미	양	가
		20%이상	↑20%만	↑10%만	↑0~10%만	↓20%만			
					20	16	12	8	4
비 계 량 (50)	조직화, 규모화 이행노력 (45)	규격품 생산, 안정물량확보 -원예전문단지 농가 확보노력, 농가확대, 참여농가(회원사포함)계 약이행도, II단계체계개선 정도등 ※연합조직은 회원사물량가격정보 공유노력 포함	10		수	우	미	양	가
				10	7	5	3	1	
		품질향상, 안전성강화 -농가교육, 품질관리사 활동, 품 질관리매뉴얼 운영의 적정성, 안전성(병해충)강화, 연구개발 등	10		수	우	미	양	가
				10	7	5	3	1	
		선도조직 활성화 -협의회 운영, 정부지원금 집행 의 적정성, 자체재원조성, 동종 업계 친화노력 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조직화 강화노력	-농가 지분참여 노력, 회원 사간 결속정도, 전담인력운영, 동종업계 참여확대, 농가계약 이행도 제고, 자체사업개발, 조직자립도 등	20		수	우	미	양	가
				20	16	12	8	4	
	마케팅 활동노력 (5)	규격품의 차별화 마케팅 노력 -브랜드,박스제작 활용, 마케 팅홍보노력, 신규시장개척노력 의 적정성 및 성과 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합 계			100점						

- * 1. 수출농식품 안전성 위반 선도조직은 감점(5점), 교육 학점 5점 미만 감점(최대 -3점, 1학점 미달시 1점 감점)
2. 평가항목·가중치는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사사오입 계산
3. 비계량항목 평가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 평균점수로 계산
4. 비계량항목 평가시 수우미양가 점수표를 기준으로 하되 1~10점사이에서 1점단위 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12년도부터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차등 지급

평가결과	최우수 (상위 2개소이내)	우 수	일 반	미 흡
	90점 이상	80점 이상	60~79점	60점 미만
지 급 율	10 %	7 %	3 %	사업대상 제외

- 평가결과 60점 미만 선도조직은 익년도부터 3년간 사업대상에서 제외.
제외기간 종료 후에는 선도조직 재신청 가능
- 사업대상제외 선도조직이 발생한 품목은 필요시 추가사업자 선정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 및 제재 실시

- 최우수조직에 현판부착, 선도조직 공동관측전 등 참여 우선권, 선진지 연수 등 포상실시
- 사업의무량 미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공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제재
- * 사업의무량 : (수출물량) 연도별 규격품 수출목표물량의 50%이상, (참여면적) 연도별
농가 사업참여 재배면적의 80%이상

○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유관기관, 단체 및 선도조직 등에 전파

6. 선도조직운영위원회 운영

□ 위 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학계·업계·연구계 등 농식품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주요기능 : 선도조직 품목 및 선정, 선도조직 운영 및 평가 등 기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7. 선도조직 지원

□ 공사에 생산이력ID 관련서류 제출 후부터 “인센티브”지원

①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농안기금)

- 선도조직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사용(세부항목 예시표 참조) 후 정산
 - 지원규모 : 최우수조직 150백만원, 신규 선도조직 및 우수조직 120, 일반조직 100(총사업비의 70%이내)

②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농안기금)

- 연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출실적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0%이내 차등 지원. 단, 신규 선도조직은 표준물류비의 7%이내 지원
 - 최우수조직 10%, 우수·신규조직 7%, 일반조직 3%
 - 규격품(품위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을 수출물량에 대하여 지원
 - 규격품에 관한 기준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급율은 매년 선도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용용도(세부항목 예시표 참조) 및 절차준수 여부는 당해연도 평가
- ※ (연합법인 인센티브)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출자한 연합법인 선도조직은 전년도 해당품목수출기여도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 이내에서 상기 지급율(10%, 7%, 3%)에 추가하여 적용
 - 규격품(품위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의 수출물량에 대하여 지원
 - 지원용도 : 연합법인의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연합법인 인센티브 신청 절차>

- (선도조직 사업자)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대상 자격 발생 시 aT에 신청
- (농식품부·aT) 연합대상 업체, 품목 및 연합화의 적정성 등 심의하여 표준물류비의 3% 이내에서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

* 다음 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조정 가능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 기준(안)>

품목 국가수출기여도 (전년도 연간 금액기준)	연합법인 인센티브(신규)
20% 미만	1.0%
20%~40%	1.5%
40%~60%	2.0%
60%~80%	2.5%
80% 이상	3.0%

* 기존 업체(조직) 통합 운영시는 각 조직 기여도 합산하여 적용

<제제사항>

-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후 회원사 탈퇴 등으로 국가 수출기여도 축소 등의 경우 지원규모 축소 및 제제조치
 - 연합법인 : 국가수출기여도 축소에 맞추어 연합법인 인센티브 조정하고 단일업체만 남을 경우는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제외
 - 탈퇴 회원사 : 3년간 선도조직 사업참여제외 및 물류비 중단(참여기간)
 - * 물류비 중단기간은 회원사가 선도조직(연합법인)에 사업참여하여 탈퇴할때까지 기간만큼을 산정하여 탈퇴월부터 적용
- 연말 평가를 통해 연합법인의 수출기여도 감소 등 성과 미흡 조직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인센티브 지원 중단 또는 축소
- 연합법인 회원사에서 농약 등 안전성 문제 발생 시에는 연합법인 인센티브, 활성화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단계적 지원중단 등 조치
 - * 단, 회원사간 안전성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므로 적용기간을 설립일로부터 3년간 유예, 연합법인은 동 기간 중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
- 인센티브 지원규모는 공사와 선도조직간 약정서에서 정한 규격품 수출물량 목표를 한도로 함

☞ 기존 선도조직 간의 연합법인 설립(합병) 경우 최근년도 선도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연합법인에 적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 각 조직 평가결과에 따른 배정액의 합을 적용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각 조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 중 유리한 지급율 적용
예시) 우수조직과 일반조직 연합의 경우
 - 기반인센티브 220백만원 적용 : $120+100$ / 활성화7% 적용 : $7\% > 3\%$

<기반조성인센티브 및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사용 세부항목 예시>

항 목	주 요 사 업	세부항목 예시
○ 품질개선	선진기술 습득	품목별 재배·생산·유통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지원 등
	우량종자(원료) 구입비 지원	우량 구근·종자 구입비, 우량원료 구입비 (가공식품 포함) 등
	생산시설개선, 자재 구입지원	생산품질 제고, 제품 수명연장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재구입비 등
	안전성 확보사업 지원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 친적구입비, 친환경·GAP·ISO등 품질인증비용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품질관리 매뉴얼제작(자문료, 제작비),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시스템(ERP)·생산이력추적시스템(S/W) 도입 비용 등
	안전성 검사 지원	잔류농약등 안전성 검사비, 규격품의 품위 선별을 위한 신규인력운영비 등
	포장개선 지원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등
○ 물류개선	물류효율화 지원	수출용 파레트, PVC상자 임차·구입비 및 지게차 임차·구입비 등 물류개선비 등
	Cold chain 유통지원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제품 저장·보관 연장제 구입비, 산지-선별장-수출업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등록, 홍보물제작, 판촉 활동 등 지원 등
○ 조직화 및 운영관리	수출전문조직의 결성 지원	회의운영, 전문가 초청 경비 등
	수출전문조직 관리운영비 지원	조직원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 무역대학, 농업 벤처대학 등 교육비 등

* 상기 항목이외에도 선도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직력 강화 및 상품의 품질향상 등 선도조직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집행 가능

③ 인센티브 집행시 유의사항

- “수출활성화인센티브(연합법인인센티브 포함)”는 별도 적립 후 반드시 선도조직 구성원들의 합의(선도조직별 협의회 등)를 거쳐 집행
- “기반조성인센티브”는 비용집행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최소 2개 항목(11페이지 예시표) 이상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기반조성인센티브”는 사업신청서상 연차별 소요액을 기준으로 정산. 세부내역 등 변경 시 변경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집행하되, 항목별 정산금액은 “붙임 7”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

□ 기반조성인센티브 정산

- 선도조직 사업종료 후에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항목별로 정산
- 정산기준
 - 사업목표 달성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정산금액 = 사업비 집행액 × 70% × 목표 달성율]
 - * 정산 금액 한도 : 약정서 상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규모 x 목표달성율
 - 사업목표 달성율은 선도조직 약정서 상의 2개 목표치(수출물량, 재배면적)의 평균 달성율에 따라 정산
 - 단, 선도조직의 해당품목 수출 증가율이 국가수출목표 증가율 이상인 경우 사업목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적용

□ 정책자금 등 지원 우대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가점 부여 (5점)
- 원예단지 품질개선사업 지원 시 우선 지원
-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HACCP) 업체선정시 가점(1점) 부여 등

【붙임 1】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 개 요

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법인설립일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 (천원)	('09) ('10) ('11추정)	종업원수	
자기자본 (천원)	('09) ('10) ('11추정)	당기순이익 (천원)	('10) ('11추정)

* 최근년도('09 및 '10) 재무제표 첨부

□ 신청품목 내역

○ 신청품목 :

※ 전체취급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10		2011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1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공사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 가능)

○ 수출물량 비중 ('11)

(단위 : 톤)

구 분	연간취급량 (또는 소요량) (A+B)	내수물량등 (A)	수출물량 (B)	수출물량중 계약 조달물량 (C)	재배 C/B
합 계					
- 생산자(조직포함)...					
- 기타(비생산자)	-				

*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2 사업계획

1. 사업참여 목적

2.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추진 기반

가. 참여농가수 및 계약면적, 생산량, 수출량 : <별지 1>양식에 기재

나. 주요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공고일 기준)

시설명		시설규모	보관,처리능력	소유구분 (자가,임차 등)	비고
계		m ² (평)			
시설	선과장(생산장)	m ² (평)	톤/일		별지 2
	저온저장고	m ² (평)	톤		
	예냉시설	m ² (평)	톤/일		
	일반창고	m ² (평)	톤		
	기타(사무실 등)	m ² (평)			
장비	선과(생산)시설	조			
	지게차	대			
	수송차량 등	대			
	기타(훈증,Packing등)				

다. 수출선도조직 인적자원 확보 현황 (공고일 기준)

○ 수출담당인력

성명	직위 및 직책	입사일자	근무경력	비고
			ex) 년 월('00.2.1~공고일)	
합계	명		년 월	

○ 품질관리전담인력 현황

성명	직책	입사일자	품질관리분야 근무경력	관련자격증 유무(명칭)	비고
			ex) 년 월('00.2.1~공고일)		
계	명		년 월	자격증 : 매	

- 증빙서류 : 해당직원의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서중 택1)

품질관리를 외부기관과 위탁계약시 외부기관과 연간계약서 사본 첨부

※ 품질관리전담인력 : 생산현장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고품질생산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

○ 품위관리전담인력 현황

성명	직위 및 직책	입사일자	근무경력	비고
			ex) 년 월('00.2.1~공고일)	
합계	명		년 월	

※ 품위관리전담인력 : 공동선별장에서 해당 품위기준에 따라 선별포장여부를 관리하는 직원

라. 생산이력 ID구축 내용 (전산자료, 사진 등 자체보유 자료로 증빙 필요)

마. 제매농가와의 정산시스템 구축내용 (자체보유 자료로 증빙 필요)

3. 신청품목 수출확대 의지

가. 수출대상국(지역)

- 주력 수출시장
- 향후 개척시장

나. 국내외 시장여건 분석

- 국내 수출여건(생산 및 유통 현황, 가격동향 등)
- 해외 수출여건(주요 수입국 및 시장규모, 소비현황, 소비자기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다. 사업목표 : 향후 3년간 연도별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 사업목표(신청품목의 수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 ① 생산하고자 하는 고품질 품위기준(시장별 소비자 기호, 바이어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부 품위기준 작성, 현재의 품질기준과 비교 작성)

* 제시한 품위기준은 향후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② 규격품 수출물량목표(비율은 전체 수출량중 규격품의 점유비율을 기재)

구 분	2012	2013	2014	‘11실적
규격품수출목표	톤(%)	톤(%)	톤(%)	톤(%)

* 목표설정시 유의사항

- 수출목표는 농가와 규격품 계약재배를 통해 매년 달성하고자 하는 규격품 수출물량으로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한도 물량이며, 매년 최소의무량(수출목표물량의 50%) 설정의 기준이 됨
- 2013년 이후 전년대비 매년 최소 10% 이상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③ 조직강화 목표(계약재배 확대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재배면적 확대	천 m ²	천 m ²	천 m ²

* 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2013년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최소 10% 증가되도록 목표 설정

○ 목표설정 근거

- 수출목표 :
- 조직강화 목표 :

* 목표치 설정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목표달성계획 (선정 이후 운영실태 점검자료로 활용예정)

가. 품질개선계획

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계획

다. 해외 마케팅계획

라. 생산농가와의 조직화 및 규모화 계획

마. 규격품 확보계획

○ 생산단지 계열화현황 및 계획

- 수매(계약재배)지역
- 단지 생산규모
- 시설현황(예냉 및 저장시설, 선별·포장시설, 운송장비 등 보유현황) 및 특징
- 참여 농가현황 등

○ 수출규격품 확보 또는 생산방법 (수확후 관리 등 상품화 방법)

○ 연구개발 현황(인력, 시설, 연간 연구비, 개발실적 등)

바. 해외마케팅 계획(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 주력시장 판촉 계획
- 신규시장개척 추진계획(시험수출, 마켓테스트 등)
- 홍보계획

사. 세부 추진계획(연도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

아. 사업비 소요액(3년간 연도별, 지원항목을 참고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

자. 인증실적(GAP, GMP 또는 ISO)

차. 해외시장개척노력

[신청품목의 최근 3개년 공사 시장개척사업(박람회, 판촉전등) 참가실적]

5. 조직 발전방안

가. 선도조직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계량 및 비계량으로 구분 작성)

나. 수출활성화 인센티브(정부 지원금) 운용관리계획 (사용용도·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정부지원금 운용을 위한 “해당품목 지원금 운용협의회(가칭)” 구성·운영계획 포함

다. 조직의 연합화·규모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동종 수출업체와 연합한 연합법인 설립·확대 계획 및 운영활성화 계획 등을 세부적 기술

라. 중장기 해당품목 수출선도조직의 비전 제시

마.. 규격품과 비규격품의 혼재 수출방지 등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애로 사항 및 대책방안 제시

※ 각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는 첨부

2012. . .

대표자 : (인)

<별지 1>

계약재배 농가 현황표

No	단지명 (작목반명)	소 재 지	생산면적 (시설면적)	연간 생산량	원예전문생산 단지평가결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최근년도 실적기준으로 작성하되, 시설면적은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를 구분하여 표기

※ 원예전문생산단지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는 최근년도 결과 제출

<별지 2>

선별장(생산시설) 보유 현황표

No	소재지	자동선별기능 (해당여부표시)			처리(생산)능력 (톤/일)	설치연도 (사용연한)	비고 (자가, 임차 등 구분)
		무게	당도	색택·형태			
1							
2							
3							
4							
5							
6							
7							
8							
9							
10							
계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귀중

당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 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아 래 -

- 1) 제공목적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 2) 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3)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 4) 비용부담 : 농수산물유통공사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2】

품질관리매뉴얼 제출 협약서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조 직 명 :

신청품목 :

당 사는 ‘12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신청서류중 하나인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품질관리매뉴얼
(자체양식)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동 매뉴얼을 '12년 6월 30일까지
제출기로 협약하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협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조직명 :

대표자 : (인)

【붙임 3】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선정 평가서

○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발전 및 성장가능성 (30)	해당품목 수출규모	15	8백만불이상	6백만불이상	4백만불이상	2백만불이상	2백만불미만
			15	12	9	6	3
	국가수출점유비중	15	50%이상	40%이상	30%이상	25%이상	25%미만
			15	12	9	6	3
고품질 생산 및 안정적 물량확보능력 (30점)	수출계약재배물량비중	15	9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15	12	9	6	3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15	14점이상	13점이상	12점이상	11점이상	11점미만
			15	12	9	6	3
사업수행 적정성 (40점)	해당품목의 생산,선별 시설 구비상태 및 품질 지도사 운영 등 품질개선 노력정도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마케팅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능력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가점 (+10)		+10	- 20이상의 수출업체로 구성된 연합법인 참가 시 5점, 30이상의 수출업체의 연합법인 참가시 8점 - 해당품목 기금조성 실적증빙, 품질관리매뉴얼 구비시 : 각 2점 - GAP, GMP, ISO, 전통식품인증, 친환경인증 등 인증보유시 : 각 1점				

◦ 평가 내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 점	비 고
발전·성장 가능성 (30)	수출규모 (‘10, ‘11평균)	▷ 신청업체의 연간 수출액 규모	15	1차심사
	수출실적 비중 (‘10, ‘11평균)	▷ 신청품목 국가전체 수출액중 해당업체 점유비율 - (업체수출액 ÷ 국가전체수출액) × 100	15	“
고품질 생산 및 안정적 물량확보 능력(30점)	계약재배비중(물량) (‘11기준)	▷ 수출물량중 계약재배물량 비중	15	“
	생산이력 추적 가능정도	▷ 수출국에서 추적가능한 농가별ID 등 체계 구축증빙 제출시 : 생산자ID구축점수(8점) + 7점 × 계약재배비중 ▷ 수출국에서 추적가능한 생산자ID 등 체계 미구축시 : 7점 × 계약재배율	15	“(현장 실사 병행)
사업수행 적정성 (40점)	농가관리·선별시설 상태, 품질·품위인 력운영의 적정성, 회원사 역할분담 등 조직관리체계 구축정도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5	3차심사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5	“
	마케팅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 능력	▷ 사업계획서 및 현장실사, PT내용 등을 종합하여 5등급 평가	10	“
계			100	
가 점		- 20이상의 수출업체로 구성된 연합법인 참가 시 5점, 30이 상의 수출업체의 연합법인 참가시 8점 ▷ 해당품목 기금조성 실적증빙, 품질관리매뉴얼 제출시 : 각2점 ▷ ISO, GAP, GMP, 전통식품인증 등 인증보유시 : 각 1점	(최대 +10)	1차심사

- ※ 1. 제출된 증빙자료가 고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2. 동일인증서류가 1개 조직에 1개 이상인 경우도 1점만 인정
 3. 계산식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4. 비계량항목 평가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 평균점수로 계산

【붙임 4】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약정서(안)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지원내용) 조직화·규모화된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지 원 명	기반조성 인센티브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규모	- 조직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70%이내)(해당란에 √표시) ○ 최우수조직 : 150백만원 ○ 신규, 우수조직 : 120백만원 ○ 일반조직 : 100백만원	규격품 수출물량에 한해 아래 표준물류비의 지급율을 지급 (해당란에 √표시) ○ 10 % ○ 7 % ○ 3 % * 연합법인 인센티브 적용율 : ()% - 연합법인의 국가수출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
지원내용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 등	

○ 세부 지원내역

항 목	주 요 사 업	비 고
◦ 품질개선	선진기술 습득	재배생산유통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선진지 연수비 지원 등
	우량종자(원료) 구입비 지원	우량 구근·종자 구입비, 우량원료 구입비 (가공식품 포함) 등
	생산시설개선, 자재 구입지원	생산품질 제고, 제품 수명연장 등에 필요한 시설 개선·자재구입비 등
	안전성 확보사업 지원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 천적구입비, 친환경·GA P·ISO등 품질인증비용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품질관리 매뉴얼제작(자문료, 제작비), 품질 점검 및 지도, 품질관리시스템(ERP)·생산이력추적시스템(S/W) 도입 비용 등
	안전성 검사 지원	잔류농약등 안전성 검사비, 규격품의 품위선별을 위한 신규인력운영비 등
	포장개선 지원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제작 등
◦ 물류개선	물류효율화 지원	수출용 파레트, PVC상자 임차구입비 및 지게차 임차구입비 등 물류개선비 등
	Cold chain 유통지원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제품 저장보관연장제 구입비, 산지-선별장-수출업체 물류관리시스템 구축개선비용 등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등록, 홍보물제작, 판촉활동 등 지원 등
◦ 조직화 및 운영관리	수출선도조직의 결성 지원	회의운영, 전문가 초청 경비 등
	수출선도조직 관리운영비 지원	조직원 관리프로그램 개발비 등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 무역대학, 농업벤처대학 등 교육비 등

제 2 조(지원방법) ① “갑”은 “을”에게 ‘기반조성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기반조성인센티브’는 “을”의 부담으로 선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갑”에게 정산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이 담보(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시하는 경우 “갑”은 ‘기반조성인센티브’의 70% 내에서 선급 지원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규격품 수출물량에 한하여 ‘수출활성화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제 3 조(약정기간) ①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지원사업 이행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기반조성인센티브 집행기한은 12월10일까지로 한다.

② 2012년도 신규 선도조직의 경우 생산이력 ID관련서류 제출일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된다

제 4 조(사업목표량) “갑”과 “을”은 약정기간 중 다음과 같이 사업목표량을 정하되, 매년 10% 이상 증가치를 부여하여 설정한다. 단, 전년실적 평가결과 목표미달, 품목의 특성 반영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 설정한다.

1. 규격품 수출물량 목표

품 목	규격품 수출목표 물량(Kg)	최소수출의무량(kg)	비 고
			최소수출의무량은 규격품 수출목표물량의 50%

○ 규격품 수출물량은 참여농가와의 약정서에 의한 공급물량을 말함

2. 조직강화 목표(조직화 · 규모화 확대목표)

항 목	사업참여 재배면적	재배면적 의무량
수출선도조직 사업조직 · 규모 확대	천 m ²	천 m ² (사업참여재배면적의 80%)

* 팽이버섯은 공장형 생산특성을 감안, 연간생산량(톤)으로 부여하고, 별도증빙에 의거 확인

제 5조(상품 확보 등)

① “을”은 수출선도조직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ID를 토대로 재배계약농가 등에게 생산이력ID를 부여후 이력관련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①항에서 제출한 재배계약 농가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선도조직 상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③ “을”은 지정된 선별장에서만 규격품을 선별 · 포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배계약농가가 고품질 ·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6조(품위 관리)

- ① “을”은 규격품 선별시 지정된 선별장에 품위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포장·선별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품위관리전담요원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전담품위관리요원”이 “품질관리 매뉴얼(또는 품위기준)” 내용을 숙지하여 선별일자별로 품위관리일지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재배계약농가에서 생산한 수출상품의 월별 선별계획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사전통보 없이 품위관리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품위관리실태점검”은 품위관리일지 점검과 선별을 마친 수출물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품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7조(안전성 및 품질관리)

- ① “을”은 수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나 병해충 및 수입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배계약농가 관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규격품 수출 시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ID를 부착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시 사업참여 농가에 대한 생산이력 관리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재배계약농가(원격지 거주 포함)가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규격품 생산을 위해 품질관리매뉴얼을 제작·활용 및 해당품목의 품질관리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품질관리지도사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지정내역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보고사항 및 평가)

- ① “을”은 생산 및 수출 등 운영현황, 기반조성인센티브 집행실적·계획, 신규 농가·회원사의 가입·탈퇴 현황, 규격품 선별일정을 월말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별지6> 작성하여 보고한다.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격월 보고 가능)
- ② “갑”은 “을”의 운영실태를 평가기준에 따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며, 연간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수출활성화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9조(상품확보 위반) “갑”은 “을”이 재배계약 농가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규격품을 제공받거나 혼입시 1회위반시 경고, 2회 이상 위반시 잔여 약정기간의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조(품위관리 위반) “갑”은 “을”이 품위관리를 소홀히 하여 규격품에서 품위기준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가. 1회 위반 시 : 경고 및 자체교육 실시

나. 2회 위반 시 : 위반사실 발견당월 수출활성화 인센티브(연합법인인센티브 포함) 지원 중단

다. 3회 위반 시 : 위반사실 발견당월부터 3개월 간 수출활성화 인센티브(연합법인인센티브 포함) 지원 중단

제 11조(안전성 위반)

① “갑”은 “을”의 수출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나 병해충 및 수입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농약이 검출된 경우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을 준용하여 수출활성화인센티브(연합법인인센티브 포함)를 제재할 수 있다.

* “을”이 연합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성 위반이 발생한 “을”의 소속 회사(수출업체) 물량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한다.

제 12조(‘기반조성인센티브’ 정산) “을”은 지원품목의 수출목표를 달성한 경우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반조성인센티브’를 “갑”에게 신청하고 “갑”은 서류검토 확인 후 30일 이내 정산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목표 달성도 등 “갑”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달성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원한다.

제 13조(결과보고) “을”은 지원품목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갑”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갑”이 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사업의무 미이행) “갑”은 “을”이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가. 전업, 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불가능일로부터 잔여 약정기간 지원 취소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의무량을 미달한 경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목표량 대비 수출실적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농식품 텀핑수출 등 수출선도조직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도조직 지정 취소. 단, 이 경우 선도조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갑”이 정한 기일내에 품질관리메뉴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도조직 선정 취소

바. 선도조직에 참여 후 중도탈퇴한 회사(연합법인인 경우)는 사업탈퇴일로부터 3년간 선도조직 사업 참여 제한하며 선도조직 사업참여 기간동안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기본·인센티브 포함)

제 15조(중복지원 금지) “을”은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갑”은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기반조성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 16조(제재의 예외)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관련 위반사항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수출선도조직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소유권 명기) “을”이 선도조직 사업관련 발간한 모든 유인물의 소유권은 농식품부 및 “갑”에게 귀속되며, 사업기간중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제18조(협조의무) “을”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이 정한 운영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선도조직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조문해석)

- ① 수출활성화인센티브(연합법인인센티브 포함) 지원 및 기타사항에 관련하여 동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및 “해당년도 농식품 선도조직 운영지침”, “해당년도 선도조직 실시계획”의 내용을 적용한다.
- ② 본 약정서 조문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본 약정 또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논란 및 의견차이 또는 합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정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이의 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갑”

“을”

【붙임 5】

수출선도조직과 농가간 표준 수출규격품 재배계약서(안)

☐ 재배·공급자(갑) 상 호 :
 대표자 :

☐ 공급 받는자 (을) 상 호 :
(수출선도조직) 대표자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수출약정 물량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기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재배·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 기간 중 “갑”은 <첨부> 기준의 규격품 물량을 “을”에게 공급 하여야 하며, 계약 물량의 10% 미만을 공급할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차년도 선도조직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품 목	재배지	참여재배면적 (천㎡)	규격품 공급 계약물량(kg)	공급시기	비 고

제 2조 “갑”은 “을”에게 “갑”의 재배지에서 생산한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계약한 물량의 판매를 총괄한다.

제 3조 “을”은 “갑”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병해충방제와 농약안전 사용 등 재배 및 농산물안전성 관리를 위한 지도의무를 가지며, “갑”은 “을”이 요청하는 규격품 생산관리 및 재배이력, 출하예상량 통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조 “갑”은 “을”에게 상품을 납품함에 있어 “을”의 품질 및 규격기준에 따라 공동 선별·포장하여 출하하며, 공급단가는 공동계산제를 원칙으로 시황을 고려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파생되는 물류비와 수수료 등 제반비용도 상호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 5조 “갑”은 제3자의 생산품을 혼입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재배과정에 기인한 클레임에 대하여 문제 발생시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 측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단, 천재지변(이상 기온, 태풍피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조 “을”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물량에 대한 일정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며, “갑”은 계약보증금 물품대 및 비용정산 등의 “을”의 의무이행 완료후 “을”에게 반환한다.

제 7조 “갑”은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 8조 “갑”이 규격품 공급의무물량 미이행시는 계약보증금의 2배에 대하여 “을”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을”이 의무물량 미이행시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갑”은 동 물량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 9조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쌍방이 본 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을 시는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물량에 대한 대금을 상호 약정한 기한내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투명한 정산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 공사에서 지원하는 수출활성화인센티브는 “을”이 수취하여 관리하되, “갑”과의 “운영협의회(가칭)”를 통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제12조 상기 계약사항 위반시 상호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탈퇴한 생산자는 사업탈퇴일로부터 3년간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상기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상습관에 따르며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과 ‘을’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선도조직 규격품 품위 기준 1부

 년 월 일

갑)

을)

【붙임 6】

생산이력ID 부여 현황표

[illegible]

<별지 4>

수출선도조직 생산이력ID 양식

【생산자 정보】

농가명				
대 표 자				
연 락 처	TEL		FAX	
	E-mail			
주 소				
생산이력 ID				
인증사항	인증명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인증번호	
자기소개				

농가사진(정면)	재배관리 모습
----------	---------

[생산자 사진]

【상품정보】

상 품 명	
품 종 명	
등 급	과실류는 과종일, 정식일 기재 필요없음

최우수, 우수, 보통

【상세정보】

과 종 일				
정 식 일				
출하개시일				
출하종료예정일				
재배시설	온실재배 ☐ 일반재배 ☐		재배면적	평
재배농법	농약재배 ☐ 친환경재배 ☐			
정밀분석결과	농약잔류검사	판정결과		
		검사기관		
		성적서 번호		
신선도유지대책				
안전관리대책				
기 타				

화훼류는
정밀분석결과, 안전성관리대책은
기재할 필요없음

【상품사진】

사진 (작물사진)	사진 (상품사진)	사진 (포장사진)
--------------	--------------	--------------

【선별장정보】

선별장명				
주 소				
대표자				
연락처	TEL		FAX	
	E-mail			
선별시설	설치년도		선별기능	
	비고		처리능력	

사진(선별장 내부 전경)	사진(선별 작업 장면)
---------------	--------------

[선별장 사진]

<별지 5>

재배계약농가 농약 안전성 준수각서

(화훼류 제외)

※ 수출선도조직 생산농가 ○○○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서명합니다.

1. 수출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생산농가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고 수출대상국에서 허용하는 농약만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전문조직 및 안전성 관리 관련기관의 농약 안전성 지도를 철저히 받으며 점검·검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조회 등
4. 수출선도조직을 통해 수출하는 포장박스에는 해당농가 ID를 부착한다.
5. 품목별로 정한 안전성 조사를 필하지 않은 생산품을 혼입하여 수출하지 않는다.
6. 위 내용에 대해 불성실 및 부정이 발견되면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따른 ID삭제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012. . .

농가 : ○○○○

서 명 : (인)

제출처(수출선도조직) :

【붙임 7】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및 정산기준

공통 기준

- 사업기간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 추진은 조직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담보(이행보증보험 증권 등)를 제시하는 경우 ‘기반조성인센티브’ 선급 가능
-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노무비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인력 명세, 임금증빙자료 등에 의거 정산
- ‘기반조성인센티브’ 수출선도조직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농가가 직접 지출한 경우는 불인정
- ‘기반조성인센티브’ 집행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 지원한도는 75백만원으로 하되, 수출확대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 지원한도 및 집행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도조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가능
-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환율 적용
 - 환율관련 증빙서류 미비시는 ‘기반조성인센티브’ 정산(지원)시점 외환은행 매도율 적용
-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비를 중복해서 수혜 불가
 - * 동일 건이라 함은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을 의미함
 - 예시) 공사 박람회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기반조성 인센티브로 신청하여 정산 불가
- “기반조성인센티브” 정산은 12월 10일까지 사업비 집행분 인정 및 수출실적은 공사의 정산승인시점(12.22)까지 선적일을 기준해 달성을 평가

항목별 세부 정산요령

□ 품질개선비

- 전문가 초청 컨설팅 :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 호텔비 : 1일 × 20만원 × 5일 = 100만원 이내
 - 바이어 인적사항, 상담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 초청자 여권사본 제출
- 제품개선·개발관련 연구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에 대해 지원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원재료(원료)구입비 : 제품개발(개선)에 투입되는 원재료(원료) 구입비용
 - 가공식품에 한정하며 한국식품연구원등 공인기관의 인증 품목신고서 제출
- 우량 구근·종자·묘목 구입비, 품질제고에 필요한 생산자재(토양개선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 친환경재배 자재 구입비, 천적구입비
 - 수출선도조직 명의로 공동구입분에 한해 지원

□ 품질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식품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
 -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안전성관리 비용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품질 점검 및 지도비 : 선도조직이 품질관리지도사를 지정하여 계약농가 품질점검 지도
 - 지원기준(업체 소재지 기준) : 관내 15천원/일, 관외 50천원/일
 - 품질관리 지도보고서(소정양식 또는 자체양식) 서류 제출

□ 물류개선 및 수출마케팅비

- 물류효율화 비용
 -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파레트, PVC상자, 지게차 등을 임차·구입하는 비용
- Cold chain 유통비용
 - 순회 수집차량 임차·구입, CA·MA저장 등 제품저장기간 연장비용,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비용 등

○ **해외시장개척비(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등)**

- 상품개발, 현지 시장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활동비
- 1인 2회까지 지원 (단, 생산농가 포함시 2인까지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 호텔비 : 1일 × 20만원 × 5일 = 100만원 이내
- * 조사(상담)결과 보고서 및 사진 등 증빙 제출

○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기술전문가 초청비와 지급기준 동일 적용**

- 바이어 인적사항, 상담실적 등 보고서 및 사진자료, 초청자 여권사본 제출

< 마켓테스트 및 판촉홍보행사 관련비용 >

○ **행사요원 지원비 : 마켓테스트 및 판촉행사 관련 출장 시 인정**

- 1인 2회까지 지원, 항공료 및 호텔비는 시장조사비 지급기준과 동일 적용

○ **판촉홍보 행사시 시식물품대**

- 사전 공사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

○ **통역·판촉요원 고용비**

- 수출선도조직 주관으로 마켓테스트 또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
- 행사기간내 고용에 한해 인정하며, 현지 통상적 보수 기준한도 내 지원
ex) 미국 : 200\$/일
-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사사진(판촉요원 포함) 및 ID카드 제출(없을 경우, 의료보험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등)

□ 조직화 및 운영관리

○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경비**

- 전문가 초청경비 : 자문료 포함 1,000,000원/회 한도내 5회까지 지원

○ **무역협회 등 수출전문가과정, 농수산물무역대학 단기 무역과정 수강료**

: 지원업체 및 계약농가 단기과정(1년 이내 과정) 이수 수강료에 한해 지원

※ 단, 별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관련 정산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정산 시 유리한 1곳에만 신청하여 정산 가능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성 경비는 기반조성 인센티브로 정산 불가능

<별지 6>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월별 추진실적 점검보고

[2012년 00월 실적]

□ 조직명 : □ 담당자 : ()

□ 수출실적(누계)

구분	'12년 계획			'12. 00월까지 수출실적			
	규격품	일반품	합계	전년동월 누계	'11. 00월 누계		
					규격품	일반품	합계
물량(톤)							
금액(천불)							

※ 규격품은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지급 물량이며, 일반품은 그 외의 수출물량임

□ 농가 현황

구 분	'11	'12. 00월	비 고
농가수(개) * ID 기준			농가 추가 내용 등 기재
생산량(톤)			누적기준(일반+규격)
재배면적(천㎡)			

□ 기반조성인센티브 집행현황

지원항목	계획(천원)	실적(천원)		내 역(금액 포함)
		금월	누계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조직화/ 운영관리				
합 계				

※ 당초 계획은 선도조직 사업신청서상 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 활성화 인센티브 집행 현황

잔액 (A+B-C)	수입		지출	사용 내용
	전월까지 누적액(A)	금월 수령액(B)	금월 지출액 (C)	

☐ 익월 추진계획

지원항목	추진내용
품질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조직화/운영관리	

☐ 익월 선별계획

☐ 기타사항

신규 회원사 가입 탈퇴 현황 등 중요사항 및 기타 애로 사항 등